

제 1326 호
1986. 11. 14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김승진
편집인 서울특별시청 김승진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1-6111-3
전화 : 735-3337

신	경	공	보	관	총	인	사	장	공	보	계	과
경	인	사	1338	시	의	관	인	사	장	공	보	계
과	리	과	김	길	기	의	관	인	사	장	공	보

시보

차 례

- ◎ 공문시행
 - 통신보안강화지시 3
 - 소양수행유공공무원표창대상자추천 (제 2 회) 5
 - 대한민국헌법범법집계 100 회추록배부 6
- ◎ 고 시
 - 제 82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7
- ◎ 구 고 시
 - 영등포구제 12 호 : 하천공작물설치허가 7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613 호 : 영등포역 지구 도시 설계 (안) 공람	8
제 617 호 : 마포로제 1 구역 제 22 지구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8
제 618 호 : 마포로제 1 구역 제 23 지구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9
제 619 호 : 을지로 2 가구역 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	10
제 620 호 : 도시계획안공고	10
◎ 구 공 고	
동대문구제 57 호 : 상설시장개설공고	11
동 각 구제 86 호 : 동장직인개각및폐거공고	11
◎ 사 령	

공 문 시 행

뜻크아 한마음 힘모아 세제로

"관안생략"

서 울 특 별 시

총무 02360-882

(731-6215)

'86.11.14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통신보안 강화지시

1. 전기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유·무선 통신이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통신보안의 취약점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그간 슬라이드등을 통한 통신보안교육 강화로 과처에 비해 통신보안업무가 현격히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최근 아직도 통신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일부 공직자에 의해 주요 국가비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2. 별첨과 같이 통신보안 강화대책을 시달하니 시산하 전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통신보안교육을 강화, 통신보안에 위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첨 부 : 1. 통신보안 강화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내무국장 전결)

수신처: 전기관

통신보안강화대책

- 1. 통신보안교육 강화
 - 반기 1회이상 통신보안 슬라이드 교육 실시
 - 구 청: 구, 동 및 보건소직원교육 실시
 - 사업소: 관찰구청과 협의하여 슬라이드 교육 실시
 - 지방공사: 자체교육 실시
 -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철저
- 2. 팩시밀리 통제 강화
 - 팩시밀리 통제 및 송·수신일지 비치 - 사전통제후 전송
 - 주요인사동정 및 대외비 이상 내용 명문전송 금지
- 3. 차량전화 (카 - 폰) 통제 강화
 - 관계관 이외 사용금지 (운전원 등)
 - 가급적 비상통신 수단으로만 사용
 - 주요인사 동정 및 대외비이상 내용 통화금지 - 차량전화는 무선전화이므로 보안성이 없음
- 4. 국제통신보안 강화
 - 국제전화
 - 비밀 및 중요내용 명문통화 금지
 - Telex

- 외교 통합 통신망 적극 활용 (외무부 운용)
- 불요불급한 내용은 전문화지암 (파우저 회대활용)
- * 국제간 사용되는 모든 통신은 위성통신을 이용하므로 100% 보안성이 없는 통신임.
- 5. 음어차재관리 철저
 - 음어차재 취급책임자 인장등록철저
 - 비밀캐비닛에 별도차재 보관함비치
 - 현재용을 제외한 과거용 및 미래용은 봉인하여 구분 보관
 - 음어차재기록부, 음어사본대장, 음어차재점검기록부를 별도 비치 기록유지 철저
 - 주 1회이상 음어차재 점검 및 월 1회 보안담당관 확인철저
 - 음어차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복제, 복사 금지
- 6. 기 타
 - 각종 무선통신망에 대한 분임통신 보안담당관 (과장급) 지정운용 - 무선통신망 운용 통제철저
 - 통신보안위규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24시간 감청 실시
 - 위규자 강력 징계조치
 - 하부직원 (운전원, 비서등)의 보안 위규사항 적발시 연대책임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번호 23200-1022

(307)

1986.11.14.

주 소 : 수신처 참조

제 목 :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계 2 회)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86년도 제2회 소송수행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하니 기일엄수 추천할 것.

가. 유공표창대상자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시 행정, 재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온 공무원.

(2) 전1항 이외의 소송담당자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로 지정받아 자료 수집작성등 현저한 공로가 있어 우리시에 소송의 결과를 얻어온 공무원 및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송담당자

나. 추천기일 : 1986.11.25 까지 (단기일후 추천은 제외함)

다. 제외대상

- (1) 공무원근속 3년, 시근속 2년 미만자
- (2) 징계처분, 직위해지, 복직후 2년 미경과자
- (3) 현부서근무 6월 미만자 (동일업무 상호간 전출자 제외)
- (4) 동일직급에서 2년내 시장 이상 표창수상자
- (5) 경고, 훈계 처분후 6월 미경과자
- (6) 소송업무 담당 6월 미만자

라. 제출서류

- (1) 공적조서 1부.
- (2) 공적요약서 3부.
- (3) 자체공서심사의결서 사본 2부 (과천공서심사위원회 구성부서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석과 01-72, 석구 1-17, 석 01-24, 석소 01-11, 석사 01-59, 석보 1-17.

(판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1226

(307)

1986.11.14.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100 회 추록 배부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100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
수령 즉시 기재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6.11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 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작과 분입물품출납원 인장 날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운송배부

2. 대본 보유부서는 기재정리 상백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100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판리에 철저히 할것. 끝.

*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관 1, 서과 1-5, 9, 10, 16, 18, 19, 21, 23-32, 34-37, 39, 43, 44, 46, 50,
52, 53, 59-65, 서구 1-17, 서보 1-7, 10, 13, 15, 서사 06, 06, 08-11, 20,
22, 23, 34, 41, 42, 52, 56.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 변경 인 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6 호('74.8.1)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법 제 25 조에 의하... 특별
시공고제 752 호('86.12.17)로 공판
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
령제 26 조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인가고시('86.2.19)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한다.

1986. 11. 14

서울특별시장

공람공고번호	사업의사항	사업의종류	사업의명칭	사업의규모
서울시공고 제 752 호	서대문구공제 3동 200의 5-8 의 7	도로 및 하수도	인왕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도로거설 B = 6-8m L = 327m 하수도 D = 450 mm L = 120m

가.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서대
문구청장)

나. 당초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실시
계획인가일로부터 '86. 6. 30

다. 변경후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6. 12. 30

라. 수용되는 사용합토지 건물의 소
제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
리명세: 변경없음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권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구 고 시

◎ 영등포구고시제 12 호

하천공작물설치허가

1. 하천법제 25 조 및 시행령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허
용(가스관매설) 허가하였거 이를
시한다.

1986. 11. 14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공사기간 : 1986.11.10-86.12.10
 나.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31번지 - 문래동 2가 52번지 앞선가 도립천
 다. 목적 : 가스관 매설
 라. 허가내역 : 점용면적 868.64㎡
 공작물내역 : 가스관매설
 L=832 m, D=400㎜
 마. 피허가자 : 서울도시가스(주) 김수근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613 호

영등포역 지구 도시설계(안) 공람공고

1.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된 영등포역 지구 도시설계(안)을 건축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서를 아래 공람장소에서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11.14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구역
 •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번지 앞선가 영등포역사 광장 및 신로부지
 • 면적 : 72,000㎡

나. 도시설계 시행지침 내용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높이, 용도, 건축한계선, 전면한계선 등
 • 옥외 공간에 관한 사항
 - 주차출입구, 주차위치, 공공공지, 공공조경, 공공보도 등
 다. 공람기간 : 1986.11.14-1986.12.13
 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건축지도과
 * 관계도서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617 호

마포로 제1구역 제22지구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 람 공 고

1. 건설부 고시제 345 호 ('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제 146 호 ('80.5.19) 서울시고시제 555 호 ('86.8.5)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제1구역 제2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김영구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 시행(안)과 신청이 있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토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
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
간내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1986.11.14

서울특별시

-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제 22 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마포구공덕동 423-3외
127필지 (제 128필지)
- 다. 시행면적 : 11,623.7㎡
○대지면적 : 8,826.5㎡
○공공시설면적 : 2,797.2㎡
-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안
- 마. 사업시행예정자 : 마포구 제 1 구
역 제 22 지구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김 영 구
- 바. 공람기간 : 1986.11.14 - 1986.
12.13 (30일간)
-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재개발과 (731-6356-9)

◎서울특별시공고제 618 호

마포로제 1 구역의 23지구 재개발조합 설립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21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건설부고시 제

446호 (80.6.19), 서울시고시 제 403.
(86.7.19)로 사업계획결정 및 환경
결정된 마포로제 1 구역제 23 지구 재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 구성
된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박경욱
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
에 의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
행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제 15 조 규
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다.
미수령자에게는 신문 공고로서 통
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
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86.11.14

서울특별시

-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제 1 구역 제
23 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마포구마포동 314-1외
63 필지 (제 64 필지)
- 다. 시행면적 : 5,199.6㎡
○대지면적 : 4,214㎡
○공공시설면적 : 955.6㎡
-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정관
- 마. 사업시행예정자 : 마포로제 1 구역
제 23 지구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 박 경 욱

나. 공람기간 : 1986.11.14-1986.12.13 (30 일간)

◎서울특별시공고제 619 호

을지로 2가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23 호(77.6.29)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257 호(78.9.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2 호(86.11.5)로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을지로 2가구역 제 6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 이용주, 이삼영 송춘자가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물 얻어 방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시행 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봉지할 것이나 미수형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6.11.14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을지로 2가

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삼각동 31 의 1, 31 의 3, 33, 34, 3 의 1, 35, 97, 98, 99, 100, 101, 103 의 3, 36 의 4, 66 의 1, 96 (계 15 필지)

- (3) 시행면적 : 1,799.3 ㎡

- (4) 시행자 : 이용주, 이삼영, 송춘자 (대표 : 이삼영)

-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의 2 여의도백화점빌딩 1132호

- (6) 시행기간 : '86.12 ~ '88.12.31

-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389.9 ㎡

○ 건축면적 : 591.7 ㎡

(건폐율 : 42.57 %)

○ 연면적 : 13,985.2 ㎡

(용적율 : 669.34 %)

○ 층 수 : 지상 13 층, 지하 5 층

○ 주용도 : 업무 및 판매시설

- (8)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620 호

도시계획안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란다.

가. 공람기간 : 86.11.14-86.11.27

(14 일간)

1986.11.14 서울특별시장

나. 도시계획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공립장소	비고
기정	학교 (계성국교)	용산구 산천동 산 1-8 일대	9,689.40	용산구청	계성국교 이전 부지
변경	학교		9,689.40	도시정비과	시설영칭 삭제

* 별첨 : 도면 생략

구 공 고

상설시장을 개설하였기 동법 제 20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 동대문구공고제 57 호

상설시장개설공고

1986.11.14

시장법 제 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대문구청장

(단위 : m)

허가 번호	시장명	소재지	개설법인	대표자	업태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허가면적	점포수
75	아리랑 백화점	장안동 462	태신개발 주	기승동	백화점	3,297.16	12,065.25	12,065.26	190

◎ 동작구공고제 86 호

동청직인개각및대기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6.11.14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권인규칙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청 직인 (민원사무전용) 을 개각 승인 하고, 구직인을 폐기코가 동규칙 제 6

1. 직인명 : 서당 제 3 동장 민원사무전용
2. 사용개시일시 : '86.11.20(목), 09:00
3. 폐인일시 : '86.11.19(수), 17:00
4. 인 영 : 별 첨

13-12 제 1326 호 시

보 1986.11.14

인	개	각	폐	기
성				
공인명	사당제 3 동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사 령				
◎ 1986 년 11 월 8 일자			명제 46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병 화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성 연	한강관리사업소	"	"	
◎ 1986 년 8 월 17 일자			명제 46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황 건 식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용산구 청과 2 동	지방행정주사	
◎ 1986 년 11 월 10 일자			명제 46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김 열 회	대법원 판결 (사건 86 누 359 '86.8.19)에 의거 '84.6.28자 "감봉 1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마포구	시민국장	지방서기관
한 진 수	대법원 판결 (사건 86 누 359 '86.8.19)에 의거 '84.6.27자 "감봉 3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세종문화회관	경리계장	지방행정사무원

◎ 1986년 11월 11일자		경계 46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안영주	서울지방검찰청과전('86.11.11-87.11.4)	강서구	지방보건의사보
김근래		동대문구	지방보건의사보
◎ 1986년 11월 14일자		경계 46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주식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용된 원에 의하여 직을 면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서울특별시장			